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 회 기 : 2023. 8. 29.(화)~9. 8.(금)(11일간)

2. 의사일정

일 시	구분	의 사 일 정	장 소
8. 29.(화) 10:00	본회의 (1차)	개 회 식	본회의장
		1.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본회의장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8.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2.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3.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24.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7.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8.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일 시	구분	의 사 일 정	장 소
8. 30.(수) 10:00	예결특위 (1차)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원회의실
8. 30.(수) 10:30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국)	본회의장
8. 31.(목) 10:00	예결특위 (2차)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경제문화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본회의장
9. 1.(금) 10:00	예결특위 (3차)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안전도시국,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본회의장
9. 2.(토) ~ 9. 3.(일)		공 휴 일	
9. 4.(월) 10:00	예결특위 (4차)	1. 예산안 조정(목록 작성)	의원회의실
9. 5.(화) 10:00	예결특위 (5차)	1. 예산안 조정(목록 작성 및 추가설명)	의원회의실
9. 6.(수) 10:00	본회의 (2차)	1. 조례안 등 심의	의원회의실
9. 7.(목) 10:00	예결특위 (6차)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의원회의실
9. 8.(금) 10:00	본회의 (3차)	1. 조례안 등 안건처리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본회의장

2023. 8. 29.(화)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 323회 임시회 —



박인범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인범 의원입니다.

‘인구의 감소는 우리의 공동체의 숨결이 더욱 얇아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7월 31일 기준, 동두천시 인구는 8만 9천316명입니다. 인구 정점이었던 2016년 9만 8천 명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7월에는 9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숨결이 얇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원인은 신도시가 개발된 양주로의 유출로 추측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동두천시에서 가장 많이 이사 간 지역은 양주시(1,820명)입니다. 과거 동두천

신도시 개발에 따라 1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연천군에서 동두천으로 이사 온 것처럼, 지금은 동두천시에서 양주 신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목적과 일자리 부족, 교육 관련, 신천 악취 등 환경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많은 시민이 동두천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동두천시는 국가산단 조성사업, GTX-C노선의 연장 추진사업.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 악취는 많이 나아져 가고 있으며, 관내 교육도 질적으로 향상되어 명문대학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가 위에서 열거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간’이라는 한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숨이 다하기 전에! 더 이상 인구가 더 감소하기 전에! 문제를 직시하며 우리는 곧 우리 공

동체의 다음 숨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현재 지역사회의 정주의식을 다시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거기에 애향심을 더욱 깊게 심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육은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보존회,
클럽, 동아리 등과 같은 그룹을 형성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친근한 우정과 사랑을 키우는 중요한 활동 분야입니다. 이러한 활
동은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 정주의식
을 더욱 강화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몇몇 종
목에서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를 보완하고, 더욱 발전된 체육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세 부
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은 언젠가는 내어주어야 할 불안정성을 가진 도
교육청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최고로 즐겨하시고,
회원 수가 300명에 달하는 파크골프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필수
적으로 파크골프장은 증설해야 합니다.

둘째, 파크골프에 밀려 신흥야구장을 사용하기로 한 야구동호회
사정을 아실 것입니다. 30~40대 야구인들의 사기진작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정규규격의 야구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암벽장 설치입니다. 임상오 경기도의원님의 노력으로 30억
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 확보와 더불어 추진 제
획서를 제출해야 할 텐데, 철저하게 준비해 대회까지 개최할 수
있는 수준의 암벽장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암벽을 오르
며 자웅을 겨루는 힘찬 도시의 이미지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많
은 사람이 모이는 국제대회 혹은 전국대회 개최일에 맞추어 락 페
스티벌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더 열띤 젊음의 축제로 이어질 수 있
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 동두천시를 만들어 갑시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들을 통해, 어르신들은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동두천에 사는 것 자체를 긍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늦은 저녁까지 합성과 박수로 운동을 즐기면서, 열기에 찬 역동적인 모습의 동두천시를 사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크골프장, 야구장, 암벽장 등의 ‘체육시설 확충’을 건의드리며, 미래 행복 도시를 향한 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 행복 만족도 제고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지난 장마 기간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에 의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컸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동두천시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사회 안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29.(화)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 323회 임시회 -



김재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연2동·송내동·상패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과 불, 이 둘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과 불은 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올여름에만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극지성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무려 48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실종 4명·부상 35명 등 가슴 아픈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나마 우리 동두천시는, 600여 공직자들의 밤샘 비상근무와 수해 위험지역 예찰 등 활동 덕분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 없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시민과 함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물이 위험한 계절을 마무리해가는 지금, 우리는 이제 불이 무서운 계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의 화재 발생률은 약 18%인 반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6%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화재 대부분이 취약한 심야 시간에 발생하고, 화재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설령 감지를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소화기가 없어서 조기 진화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택화재 인명피해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화재의 “뒤늦은 발견”인 셈입니다. 주택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골든 타임은 3분입니다. 이 3분을 놓치면 부상 또는 사망의 심각한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2010년에 설치율 96%를 달성했으며, 32년간 화재 사망자가 56% 감소하는 뚜렷한 안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가정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화재사망률이 50%까지 감소한다는 미국 소방협회의 조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화재경보기

설치율 35%를 2011년에는 88%로 끌어올려 22년간 화재 사망자를 54% 줄였으며, 목조주택이 많은 일본도 2008년 36%에서 2014년 80%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높임으로써 6년간 화재 사망자가 12%나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단독주택 및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시·도는 이 법률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효과로, 2013년 대비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 건수는 0.6% 줄어들었고, 주택화재 사망자 수도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차츰 나아지고 있는 전국 통계와는 달리 동두천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5개 등급으로 공표하는 전국 지역안전 지수에서 동두천시는 2022년 화재 분야 4등급을 받았습니다. 2021년 2등급에서 두 계단 하락한 것인데, 동두천시의 화재 안전 실태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등급 하락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에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2019년에 개정됨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우리 시는 아직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해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일반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예산이 한 차례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그 어떤 예산 항목보다도 최우

선적으로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동두천시 화재취약계층 중 혹시라도 아직 지원받지 못한 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나아가 일반계층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인 ▲피난안내선, ▲피난유도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 설치 지원을 통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주택화재 예방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현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화재로부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 당부하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8.(금)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제 323회 임시회 -



황주룡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제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주룡 의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동두천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저울철 ‘제설작업’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저울철 폭설이 내리고 난 후, 시 홈페이지에는 동두천시 제설작업의 신속함과 완벽함에 대한 시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인근 시군 그 어디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동두천의 제설 행정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울철 제설에서 보여준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도로변 잡초 제거’에서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변 잡초 제거’는 곧 동두천 도시미관 개선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요즘 보도를 걷다 보면 민망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뒤덮인 인도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단지 보도뿐만이 아닙니다. 하천변은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 차도 변까지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모기와 같은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되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어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도시환경의 쾌적함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더욱 세심한 관심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

야 합니다.

물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게 잘 자라난다는 잡초의 자연적인 특성상, 관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변 등 잡초 제거는 도시 미관 개선의 필수 과제라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드 체크와 현장 출동 등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께서도, 잡초 문제를 비롯한 도시환경과 미관에 대한 시민의 불편과 개선 희망 사항을 많이 듣고 제시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 도로과는 제초 관련 용역/공사 예산 86,186천 원을 21개 구간 총 138,532㎡ 3회 제초에 집행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관내 가로수 하부 잡초 제거 및 전정 공사에 총 195,000천원 예산을 들여 총 43,300㎡ 3회 관목 전정과 예초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신천 녹지 예초 및 관목 전정 공사로 하봉암교에서 양주시 경계, 동

광고에서 양주시 경계 두 구간에서 269,000천원을 집행했고,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매년 4월에서 9월까지 신천변 제초작업에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는 잡초 제거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잡초와 관련된 도로 환경 민원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늘 해오던 것처럼 그냥 용역업체에만 맡기고 그때그때 땀질만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변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잡초 제거사업을 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 시에, 전문 용역이 필요한 사업과 단순 노무 사업을 구분하고, 전환이 가능한 용역 위

탁사업은 ‘동두천시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 마킹을 제안합니다. 2021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식품부 및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식품용 산성 액체인 빙초산이 엽록소를 파괴해 광합성 기전에 장애를 유발하여 식물을 고사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봄·가을 또는 잡초 발생 초기에는 1%, 여름 잡초에는 8% 농도로 사용하면 3일 이내 100% 제거할 수 있으며, 이 농도는 토양 pH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검증됐다고 합니다. 생태계 오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했거나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친환경 잡초 제거 방안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로킹 블록 설치 인도에 발생하는 잡초 제거 대책입니다. 블록 간 틈새에서 자라는 잡초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합성수지

블록 등 신기술이 접목된 자재로 조금씩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
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 집·내 상가 앞 잡초는 내가 제거한다”라는 선진 시민의
식 고취를 독려하고, 각 동 새마을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제초작업을 위해 용역비 등으로 매년 4억 4
천만 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잡초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현행
제초작업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담당 부서가 도로과와 공원녹지과로 이원화되어 있
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 설정, 제초 시기와 횡
수, 기간제 근로제 운영과 친환경 제초제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향
후 사업추진 시 도로변 및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의 제초 시기와 담당구역 등을 명확히 지정하여 효율적인 가로환경 개선에 한 팀이 되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잡초 제거 등 가로환경 민원에 바로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진 도시환경은 곧, 동두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오늘날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들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증 감
총 계	634,232,298	622,641,707	11,536,591
일반회계	555,868,255	543,507,544	12,306,711
특별회계	78,364,043	79,134,163	△770,120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계	555,868,255	계	555,868,255
· 지방세	56,300,000	· 일반 공공 행정	41,248,536
· 세 외 수 입	17,411,562	· 공공질서 및 안전	3,649,793
· 지방교부세	135,039,000	· 교 육	12,970,768
· 조정교부금 등	93,030,000	· 문 화 및 관 광	62,306,328
· 보조금	222,494,439	· 환 경	26,212,777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593,254	· 사 회 복 지	221,796,196
		· 보 건	11,782,597
		· 농 림 해 양 수 산	17,358,042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109,385
		· 교 통 및 물 류	52,989,316
		· 국 토 및 지 역 개 발	24,586,559
		· 예 비 비	12,243,702
		· 기 타	62,614,256

○ 특별회계

계	78,364,043 천원
•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39,713,209 천원
•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28,943,277 천원
•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2,661,773 천원
• 주 차 장 사 업 특 별 회 계	1,133,438 천원
• 도 시 재 생 특 별 회 계	467,242 천원
•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특 별 회 계	2,049,077 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96,027 천원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 요 :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
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 증액분 반영

나.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당초	12,053,604	2,783,721	311,200	14,526,125	2,472,521
변경	12,069,407	2,797,020	481,300	14,385,127	2,315,720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도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동두천시 상징물(BI, 캐릭터, 서체) 개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 시기의 규격과 모양에 대한 규정 외에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깃봉 및 깃대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브랜드 정의 및 종류 신설(안 제2조, 제3조)

나. 상징물 명칭 및 종류 변경(안 제3조)

다. 시기의 깃봉 및 깃대 기준 조항 수정(안 제7조)

라. 기존 도시브랜드, 휘장, 캐릭터 디자인 변경(별표2부터 별표6까지)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1. “상징물”이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휘장·캐릭터·마스코트·전체상징물·동물·식물·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

2. “공공브랜드”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상징물 종류)”를“(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징마크 : 별표 1
2. 도시브랜드 : 별표 2
3. 시기 : 별표 4
4. 휘장 : 별표 5

5. 캐릭터(디디씨) : 별표 6

6. 대표서체(소요단풍체) : 별표 7

② 공공브랜드의 종류는 상징물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서체 등을 포함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의 상징물에 대하여”를 “제3조제1항 제 1호부터 제6호의 상징물에 대하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 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있으며, 규격과”를 “있으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격과 모양”을 “모양”으로, “같다”를 “같고, 별표 4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 까지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도시브랜드

□ 의미

동두천의 자음 ‘ㄷ, ㄷ, ㅌ’과 영문 이니셜 ‘D, D, C’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형이 가능토록 디자인하였다. 중앙에 위치한 미소 짓는 표정은 동두천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민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밝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한다. 동두천의 시화(황매화), 시목(은행나무), 시조(파랑새)에 싱그러운 그린 컬러를 적용하여 ‘자연과 생태가 어우러진 도시 동두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 모양

○ 국문타입

	
상하조합	좌우조합

○ 영문타입

	
상하조합	좌우조합

<별표 3>

도시브랜드기

□ 약기



□ 정기



<별표 5>

휘 장

☐ 의미

휘장은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품위와 품격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응용항목이나 홍보물 등 상징성이 요구되는 매체에 사용된다.

☐ 모양

○ A 타입



○ B 타입



<별표 6>

캐릭터(디디씨)

□ 의미

‘디디씨(DDC)’는 Dongducheon City의 영문 약자로 동두천을 상징하는 ‘디디(DD)’와 호칭을 뜻하는 ‘씨(氏)’를 합성하여 친근하게 표현한 이름이다. 시민들의 소망과 열망, 희망이 모이고 쌓여 만들어진 마스코트로 밝고 편안한 컬러와 매끄러운 질감을 통해 동두천시의 활기를 표현하였으며 공처럼 톱톱 튀는 모양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순간 어디서든 나타나는 친절한 도우미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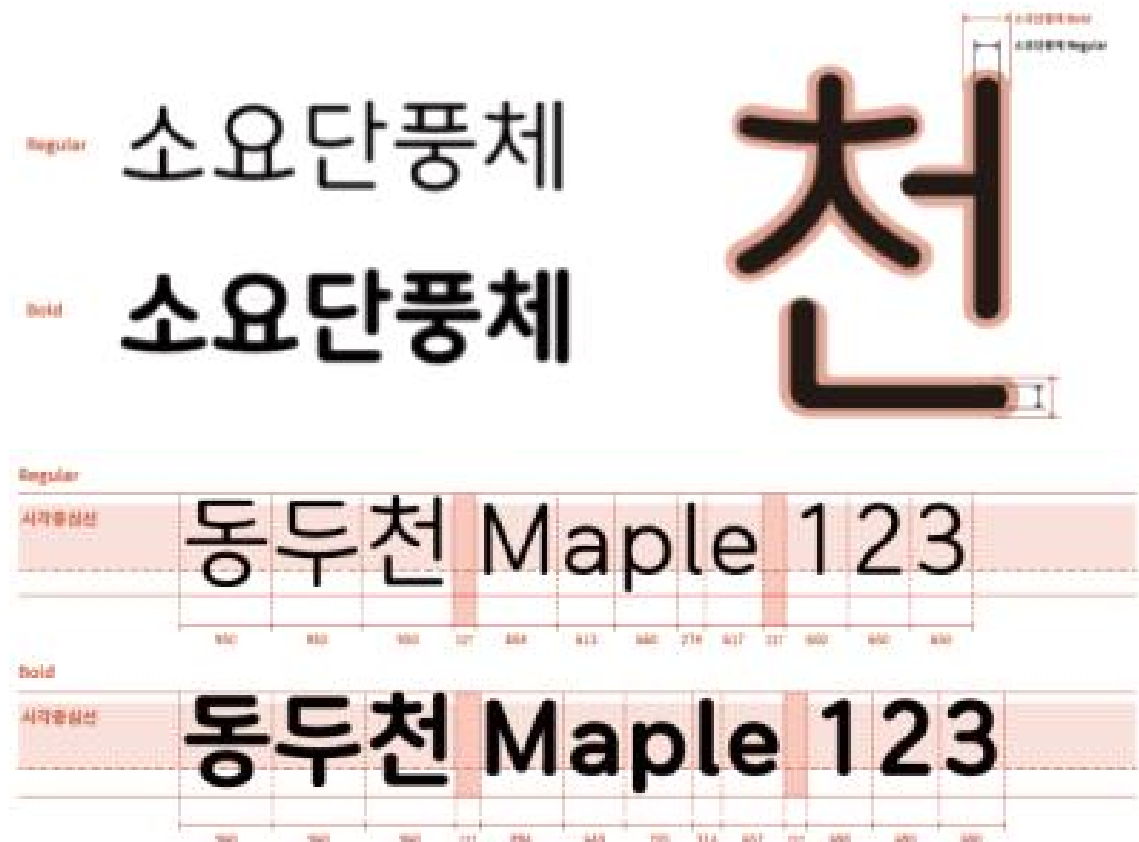
<별표 7>

대표서체(소요단풍체)

□ 의미

‘D’가 연상되는 자음의 형태와 상승곡선을 통해 미래를 향한 발전의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며, 소요산의 아름다운 단풍에서 착안한 ‘ㄷ’의 형태로 다채로운 문화 거점도시 동두천을 표현하였다. 또한 한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한글 자소의 꺾임 형태, 상승곡선, 내릿점 형태, 정 원에 가까운 〇의 형태 등 한글의 형태적 특징을 영문과 특문에도 통일감있게 적용하였다.

□ 모양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각종 마크 및 로고, 도시브랜드, 휘장, 시기,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휘장·캐릭터·마스코트·전체상징물·동물·식물·그 밖의 생물종 등을 말한다. 2. “공공브랜드”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u>상징마크 및 로고타입</u> 2. <u>도시브랜드</u> 3. <u>시기</u>	제3조(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류) ① ----- ----. 1. <u>상징마크 : 별표 1</u> 2. <u>도시브랜드 : 별표 2</u> 3. <u>시기 : 별표 4</u>

4. 휘장

5. 캐릭터 : 다람쥐, 단풍요정

<신 설>

6. ~ 8. (생 략)

<신 설>

제5조(상징물의 사용관리) ① (생 략)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의 상징
물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이미지 통합
매뉴얼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도시브랜드) ① 도시브랜
드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
다.

4. 휘장 : 별표 5

5. 캐릭터 : 별표 6

6. 대표서체 : 별표 7

7. ~ 9.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
지와 같음)

② 공공브랜드의 종류는 상징물을 제
외하고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공
적 영역에서 활용하는 명칭, 로고,
서체 등을 포함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관리)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의 상
징물에 대하여-----

-----.

제6조의2(도시브랜드) <삭 제>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③ (생략)

제7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생략)

제8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②·③ (생략)

제9조(캐릭터) ① 캐릭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캐릭터는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① -----

----- 있으며, -----
-----.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시기) ① ----- 모양-----
----- 같고, 별표 4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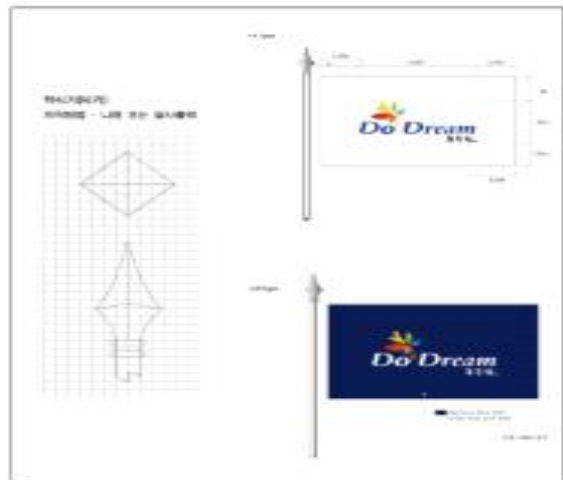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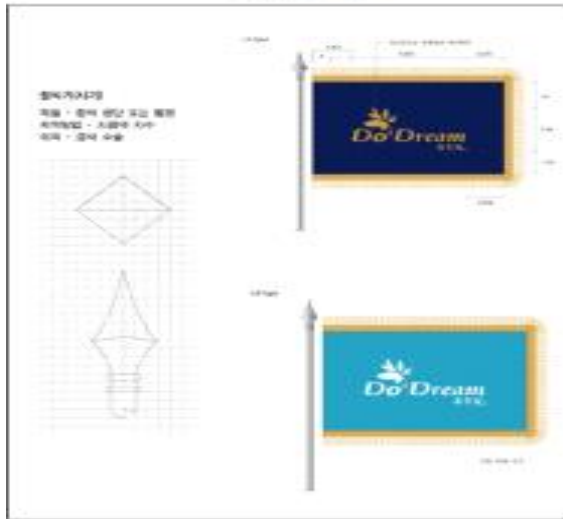
제8조(휘장) <삭제>

①·②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삭제>

[별표 3]

도시브랜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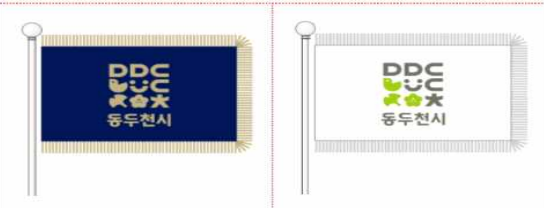
[별표 3]

도시브랜드기

□ 약기



□ 경기



[별표 5]

휘 장

㉠ 의미
 휘장은 상징마크와 도시표장표를 이용하여 개칭된 것으로 문자와 문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동등정책이나 홍보물 등 상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 보탕
 ○ A 그림



○ B 그림



[별표 5]

휘 장

㉠ 의미
 휘장은 상징마크와 도시표장표를 이용하여 개칭된 것으로 문자와 문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동등정책이나 홍보물 등 상징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 보탕
 ○ A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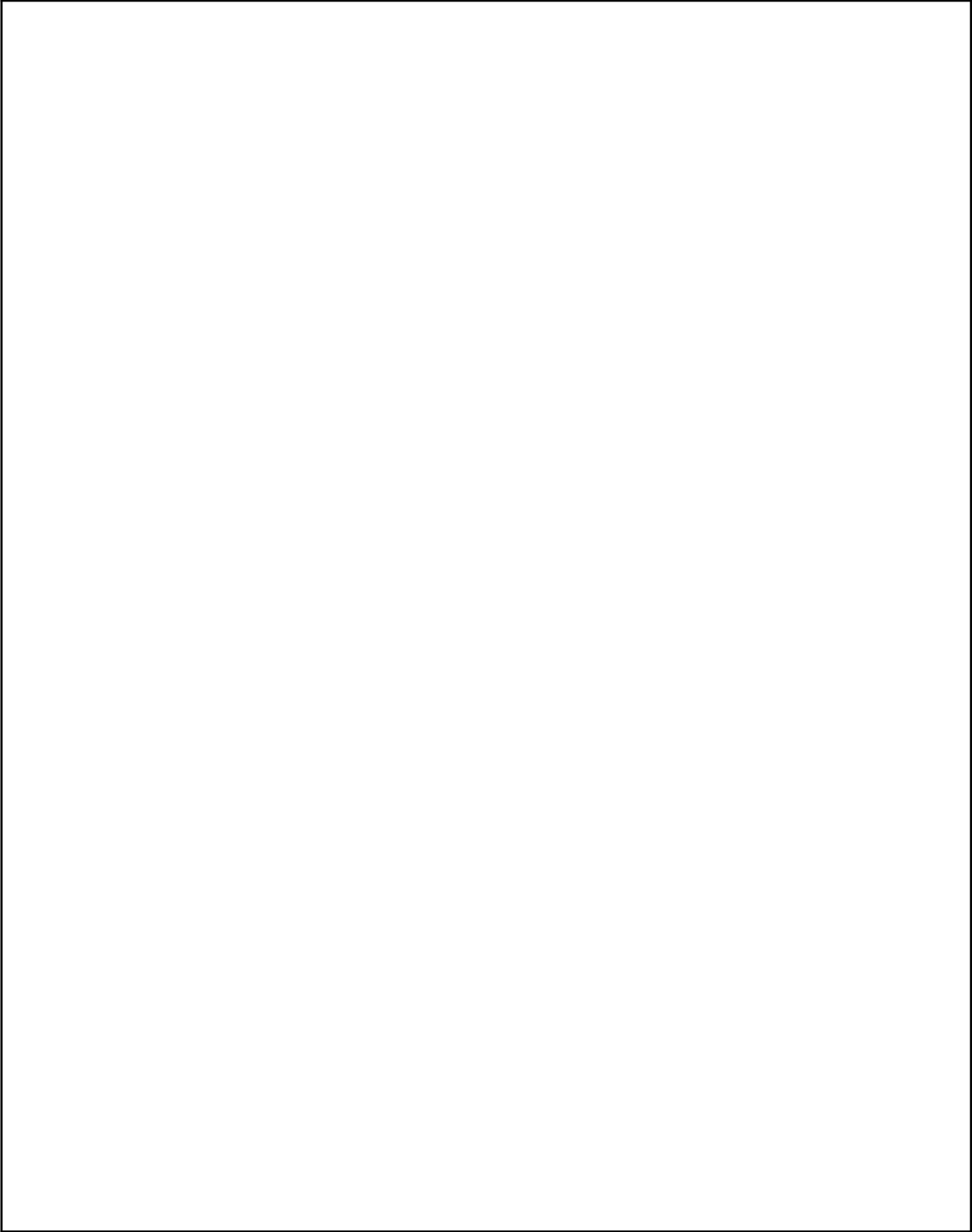
○ B 그림



<신 설>

[별표 7]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비용추계서

1. 관련조문 및 비용발생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5조(상징물의 사용관리)
 -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의 상징물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이미지 통합 매뉴얼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 완료 시 발생하는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 상징물 사용 현황 조사 기준으로 비용 추계
 - 소모성 공공용품(명함, 봉투류, 상장 등) 제외

(단위: 천원)

구분	계	소계				
		사인류	서식류	유니폼류	홍보류	기타
계	585,908	414,968	6,130	46,000	50,860	67,200
공공공간	190,190	188,230			1,960	
공공시설	154,930	91,130			1,600	62,200 (시설물)
공공행정	240,788	136,358	6,130	46,000	47,300	5,000 (유니폼류)

나.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시비)

3.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대한민국국기법

행정안전부(의정담당관) 02-2100-4076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乾:☰, 坤:☷, 坎:☵, 離:☲)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은백색·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 정) 2001.05.04 조례 제1078호

(일부개정) 2008.12.24 조례 제1456호

(일부개정) 2011.05.20 조례 제1565호

(일부개정) 2016.04.11 조례 제18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각종 마크 및 로고, 도시브랜드, 휘장, 시기,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2008.12.24>

제3조(상징물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2. 도시브랜드
3. 시기
4. 휘장
5. 캐릭터 : 다람쥐, 단풍요정
6. 시화(市花) : 황매화 <개정 2011.05.20>
7. 시목(市木) : 은행나무
8. 시조(市鳥) : 파랑새 <개정 2008.12.24><개정 2011.05.20>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계각층의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사용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의 상징물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이미지 통

합 메뉴얼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제6조(상징마크) ① 상징마크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상징마크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명의로 각종 인·허가, 면허증,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 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와 시설 또는 물자

제6조의2(도시브랜드) ① 도시브랜드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③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24]

제7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12.24>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8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2.24>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캐릭터) ① 캐릭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② 캐릭터는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

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보조 캐릭터 및 응용상품의 개발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홍보물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상징물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또는 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신청서에 의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및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사업으로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견본 등 제출 요구) 시장은 필요시 사용자에게 상징물을 이용한 제작품 등의 본보기 또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기록 관리) 시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신청 접수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 5. 4 조례 제10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시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 12. 24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5. 20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12.24>

상징마크

심벌마크 기본형



심벌마크 설명

전체적으로 동두천시의 한글 이니셜 'e'의 이미지와 소요산, 그리고 소요산 단풍을 모티브로 하여 환경 중심의 미래지향형 전원도시를 형상화 하였다.

또한 역동적인 붓터치는 동두천시가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 무한 성장하는 동두천시의 가능성을 형상화 한 것이다.

초록색은 맑고 깨끗한 동두천시의 자연환경을 나타내며, 붉은색은 단풍으로 물든 소요산의 자태를 표현함과 동시에 통일을 향한 동두천 시민의 강한 열정을 나타낸다.

도시브랜드

□ 의미

소요산을 상징하는 단풍을 그래픽 모티브로 활용하여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동두천시의 다양한 모습과 미래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트 형태는 “사랑, 화합, 조화”를 상징하고 있으며 시민에 대한 사랑과 민관의 화합, 미래발전에 대한 조화로움을 상징하고 있다. 나뭇잎 형태는 “동두천시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상징하며, 사람형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동두천시”를 상징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가는 동두천시와 살맛나는 미래도시 동두천을 상징하고 있다. 단풍의 형태는 소요산의 단풍을 형상화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동두천시를 상징하고 있다.

“Do Dream”로고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동두천시의 모습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명조계열의 타입을 사용하였으며, “D”의 형태를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이미지가 표현되도록 하였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두천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동두천”의 시명은 강인하게 보이도록 캘리그래픽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면서도 강인해 보이도록 하여 강한 응집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천”자의 길게 뻗어나간 받침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동두천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모양

○ 영문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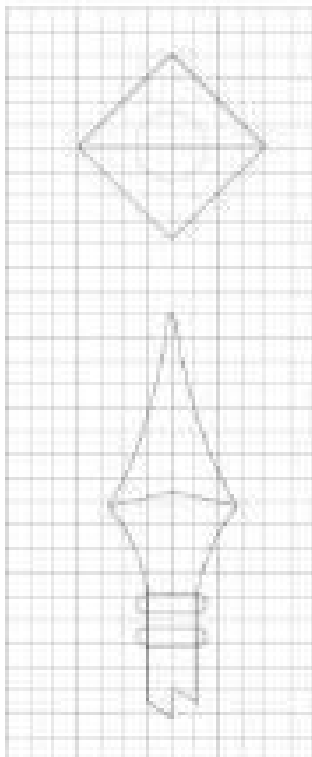
○ 국문타입



도시브랜드기

정식기(서기)

재질 - 황색 봉단 또는 벨벳
 제작방법 - 지정색 자수
 외곽 - 금색 수술



≪ A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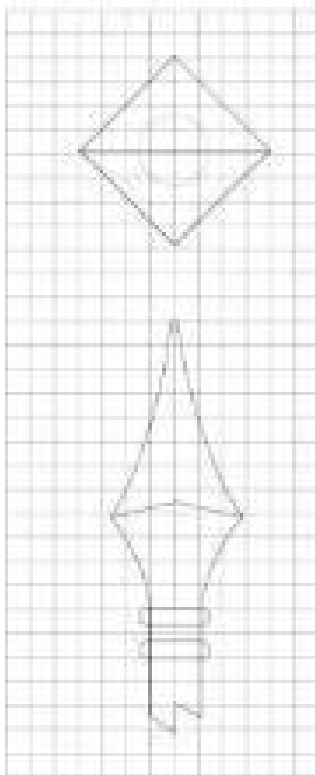


≪ B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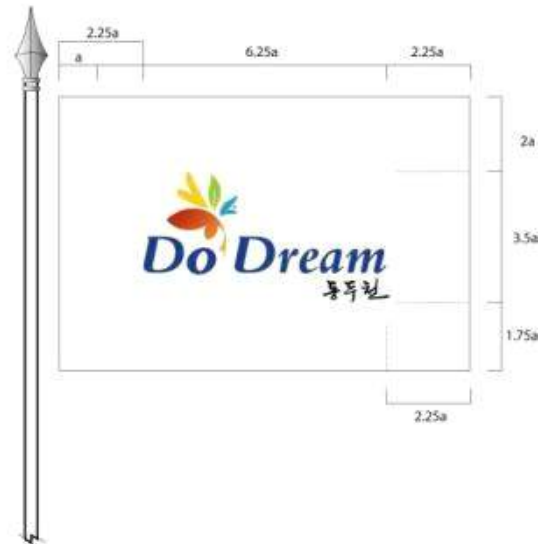


학식기(세기)

제작방법 - 나뭇 또는 실시출력



≪ A Type



≪ B Type



시 기

정식기(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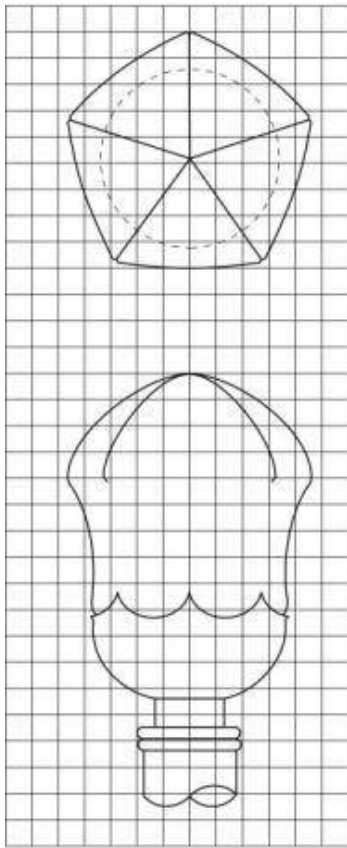
규격 - 1350 × 900

치수의단위 - mm

재질 - 흰색 공단 또는 벨벳

제작방법 - 지정색 자수

외곽 - 금색 수술



약식기(시기)

규격 - 1350 × 900

치수의단위 - mm

제작방법 - 나염 또는 실사출력



<별표 5> <개정 2008.12.24>

휘 장

□ 의미

휘장은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품위와 품격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응용항목이나 홍보물 등 상징성이 요구되는 매체에 사용된다.

□ 모양

○ A 타입



○ B 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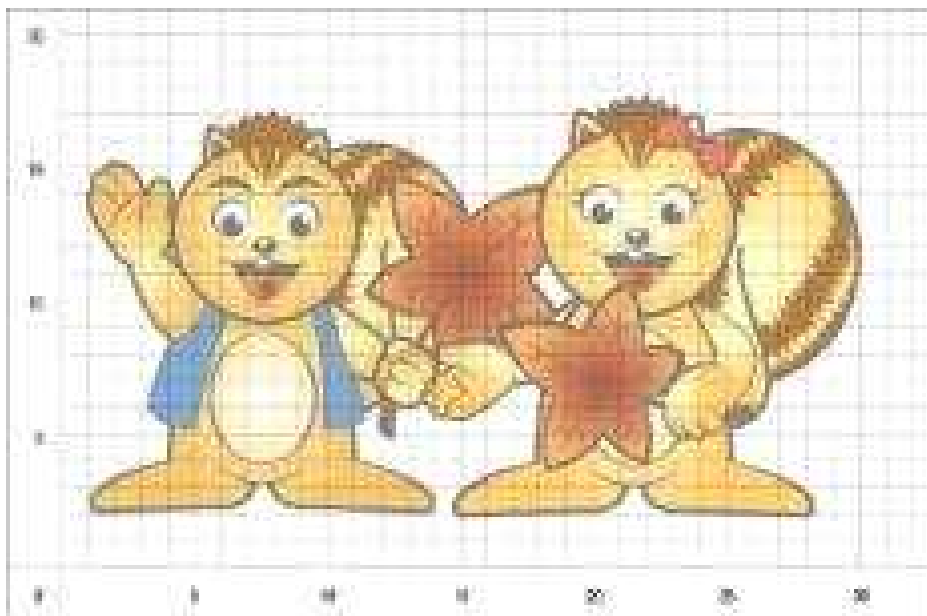


<별표 6>

1. 캐릭터 - 다람쥐

소요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다람쥐를 남녀 한 쌍으로 형상화 하였다.

평화를 사랑하며 부지런한 습성을 지닌 다람쥐는 동두천시민의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정신과 성실 근면함을 나타낸다. 단풍잎을 들고 있는 모습을 통해 동두천시의 자랑인 소요산 단풍의 수려함을 암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두천시를 찾는 사람들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귀엽고 깜찍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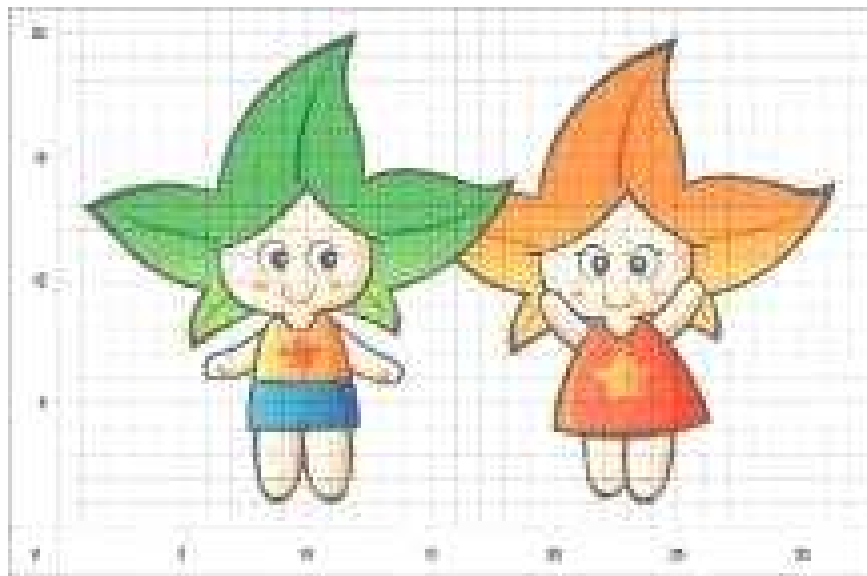


2. 캐릭터 - 단풍요정

소요산 단풍의 이미지를 귀엽고 천진난만한 단풍요정으로 형상화 하였다.

또한 붉고 푸른 소요산 단풍의 수려함을 나타내기 위해 잎새를 머리의 형태로 표현 하였으며 단풍요정의 밝은 미소는 동두천시의 희망찬 미래를 상징한다.

뽕은꼴의 남녀 표현은 동두천시민이 한가족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에 따라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에 따라 협의체 명칭 변경 (안 제9조, 제10조)
 - 위원장을 소관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다함께돌봄 업무 팀장에서 아동 돌봄 업무 팀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과장에서 아동 돌봄 업무 과장으로 변경 (안 제10조)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다함께돌봄협의체”를 “지역돌봄협의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다함께돌봄협의체”를 “지역돌봄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관국장”을 “부시장”으로, “다함께돌봄 업무 팀장”을 “아동 돌봄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함께돌봄 업무 과장”을 “아동 돌봄 업무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u>다함께돌봄협의체</u>의 설치)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 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u>다함께돌봄협의체</u>(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u>다함께돌봄협의체</u> 구성) ① (생략)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u>소관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u>다함께돌봄 업무 팀장</u>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u>다함께돌봄 업무 과장</u> 및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6. (생략) ④ (생략)	제9조(<u>지역돌봄협의체</u>-----) ① ----- ----- ----- <u>지역 돌봄협의체</u>-----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u>지역돌봄협의체</u> ----) ① (현행과 같음) ② ----- <u>부시장</u>----- ----- ----- <u>아동 돌봄 업무 팀장</u>----- -----. ③ 당연직 위원은 <u>아동 돌봄 업무 과</u>-----<u>장</u>----- ----- ----- -----. 1.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449,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지시설) 044-202-3432, 3437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신설 2019. 1. 15.>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 운영 매뉴얼

2019. 6. 14.

보건복지부

2. 기초돌봄협의체

가. 구성 및 운영

- ① 기초협의체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수준 지역돌봄협의체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운영
- ② 시·군·구 교육지원청 및 관련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 참여
- ③ 기초협의체는 부단체장 협의체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대표자, 민간전문가 등 내외 참여
 - ※ 민간전문가 :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추천
- ④ 은광일돌봄기초협의체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대표
- ⑤ 협의체는 연 2회 이상 회의 진행
 - ※ 上. 돌봄 종합계획 수립/ 下. 돌봄 성과보고회, 그 외 필요시 추가 개최
- ⑥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협의체 참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나. 기능 및 업무

- ① 돌봄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는 단위에서 구성된 협의체로서 돌봄서비스 연계의 핵심 역할 수행
- ② 기초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의 소관 시설인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역할을 연계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③ 기초협의체의 결정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모든 기관에 적용
- ④ 기초협의체는 해당 지역 내에서 다음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결정·지원
 - 돌봄종합계획 수립(기관 간 서비스 연계방안, 돌봄수요에 맞는 공급 확보방안 등 포함)
 - 지역내 돌봄 사각지대의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기타 지역의 방과 후 돌봄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표 2> 기초돌봄협의체 구성의 예

구분	소속	직책 (예시)	비고
당연직	지방자치단체	무단재장	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 담당 과장	간사
		지역아동센터 담당 과장	
		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담당 과장	
		이웃학교 등 담당과장	교육지원과 등
		그 외 초등학교 등 담당 과장	
	교육청	교육장	
		초등학교교실 담당 과장	
		초등학교 우수교사 담당 과장	
위촉직	인간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지지채 추천	
		교육지원청 추천	
	유관기관	돌봄기관 대표 (예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방과후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교실 등)	
		돌봄기관 이용 학부모	
		돌봄 관련 협동조합 등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정) 2021.07.29 조례 제221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초등학교 저학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8조(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돌봄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다함께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다함께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다함께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 업무 과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지역 돌봄 기관 대표
3. 돌봄 분야 전문가
4.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5. 아동·청소년담당 경찰 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험)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 7. 29.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입주자 지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19세~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센터”란 동두천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승인을 받은 창업자를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초기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공간 지원
3.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4. 창업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조건,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입주자 지원)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공간·시설, 사업화 자금,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해서 입주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제11조(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령별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2.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발전 지원
3. 청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기업 간 교류·협력 촉진
4. 그 밖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창업지원시설”이란 고양시가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청년창업지원”이란 고양시에서 청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4.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청년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의 관할 구역에 청년창업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장 및 사무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청년창업지원시설의 기능)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창업자 지원기준 및 방법, 창업지원시설의 사용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청년창업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흥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창업센터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창업센터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시흥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
3. 창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4.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등 창업 지원
5. 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
6. 그 밖에 창업지원과 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

제4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창업지원 및 제조업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흥창업센터를 공동운영·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 및 위탁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년창업 및 제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창업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

행할 것.

2. 수탁자는 시설·장비·운영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3. 시흥창업센터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제8조(입주 및 관리규정 등) 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흥창업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재정수반 요인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입주자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 시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비용을 추계함
- 인건비는 타시군 청년센터 매니저 급여를 참고하여 약 4천만원으로 산정 하였으며 매년 임금 인상률 약 5%를 예상치로 전제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총 소요액	360,000	378,000	396,900	416,746	437,582	1,989,228
인건비	120,000	126,000	132,300	138,915	145,861	663,076
운영비	60,000	63,000	66,150	69,458	72,930	331,538
사업비	180,000	189,000	198,450	208,373	218,791	994,614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합 계	1,989,228		
2024년	360,000	- 인건비(3명) - 운영비(일반수용비, 시설유지비 등) - 사업비(사업화자금, 엑셀러레이팅, 판로, 제품상용화 지원, 청년 프로그램 운영 등)	
2025년	378,000	“	연5% 증가
2026년	396,900	“	연5% 증가
2027년	416,746	“	연5% 증가
2028년	437,582	“	연5% 증가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국 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도 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시비	소 계	325,000	343,000	361,900	381,746	402,582	1,814,228
	일반회계	325,000	343,000	361,900	381,746	402,582	1,814,228
	특별회계						
합계		360,000	378,000	396,900	416,746	437,582	1,989,228

6. 작성자(부서) 의견 : 의견 없음

7. 작성자 :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명칭을 정비하고 원활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지원 근거를 신설함.

☐ 주요내용

- 센터 명칭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로 변경
- 조례의 목적에 근거 상위법령인 「진로교육법」을 명시함(안 제1조)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2항)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동두천시 진로 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들”을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들”로, “진로 직업체험지원센터”를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진로직업교육”을 “진로교육”으로 한다.

제3조 중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을 “(사업 수행 및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센터는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u> <u>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들</u> 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동두천시 <u>진로직업체험지원</u> <u>센터</u>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u>진로</u> <u>직업교육</u>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u>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u> <u>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 「<u>진로교</u> <u>육법</u>」 제5조에 따라 <u>청소년들</u>- ----- ----- ----- <u>진로체험지원</u> <u>센터</u>----- -----.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진로</u> <u>교육</u> ----- -----.

제3조(설치)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청소년수련관 내)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생략)

<신설>

제3조(설치) -----

----- 진로체험지원센터

-----.

제5조(사업 수행 및 활성화)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센터는 진로교육과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정) 2017.11.22 조례 제19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 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청소년수련관 내)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4.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1.22.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2024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창업 분야 전문지식 및 창업자 육성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센터 운영의 안정성·전문성·효율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주요 위탁 사무

-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및 입주자 모집 및 선정·관리
-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위탁기간 : 3년(2024. 4. ~ 2027. 3.)

다. 위탁예산 : 360,000천원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2024년 6월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 예정
- ◆ 창업 분야의 종합적인 전문지식 및 창업자 육성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센터 운영의 안정성·전문성·효율성 등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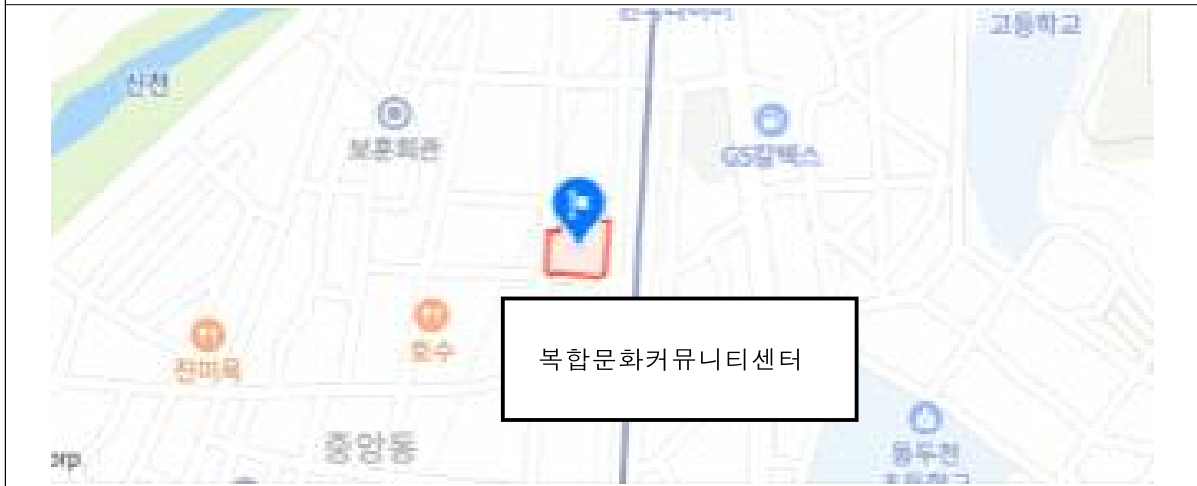
☐ 추진근거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시설 설치·운영)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중

☐ 위탁 시설물 현황

- 시 설 물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 위 치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1층(생연동 557-3번지)
- 규 모 : 1,157㎡ (350평)
- 주요시설 : 교육(프로그램)실, 다목적회의실, 독립오피스(소형~중형), 물품보관창고, 공유오피스, 운영사무실, 라운지, 청년카페 등

위치도



☐ 운영계획

- 개 소 일 : 2024. 6.(예정)
- 운영시간 : (월~금) 09:00~21:00, (토) 09:00~18:00, 공휴일 휴무
- 운영인력 : 3명(센터장 1, 매니저 2)

☐ 위탁사무의 내용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예비창업자 발굴 · 육성
- 입주자 모집 및 선정 · 관리

- 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 관리
-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청년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그 밖에 센터 운영 활성화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 **위탁 기간 : 3년(2024. 4. ~ 2027. 3.)**

※ 2024. 6. 개소 전까지 사전 준비 및 공간 구성 자문인력 필요

☐ **위탁 예산 : 36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합계	360,000	
인건비	120,000	○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120,000천원
운영비	60,000	○ 사무관리비 20,000천원 ○ 공공운영비 40,000천원
사업비	180,000	○ 사업화 자금 50,000천원 ○ 예비·초기창업자 육성 40,000천원 ○ 컨설팅 프로그램(세무, 법률 등) 6,000천원 ○ 제품 상용화 및 판로 지원 20,000천원 ○ 입주기업 네트워킹 1,000천원 × 4회 = 4,000천원 ○ 창업 경진대회 10,000천원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10,000천원 ○ 청년공간 프로그램 4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 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청년창업 및 청년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공익성을 띠고 있으나 능률성 및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써,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 계획**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 2024년 1월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4년 2월
- 수탁기관 결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2024년 3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년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보조
- 「동두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시설 설치·운영)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 시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비용을 추계함
- 인건비는 타시군 청년센터 매니저 급여를 참고하여 약 4천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매년 임금 인상을 약 5%를 예상치로 전제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총 소요액	360,000	378,000	396,900	416,746	437,582	1,989,228
인건비	120,000	126,000	132,300	138,915	145,861	663,076
운영비	60,000	63,000	66,150	69,458	72,930	331,538
사업비	180,000	189,000	198,450	208,373	218,791	994,614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합 계	1,989,228		
2024년	360,000	- 인건비(3명) - 운영비(일반수용비, 시설유지비 등) - 사업비(사업화자금, 엑셀러레이팅, 판로, 제품상용화 지원, 청년 프로그램 운영 등)	
2025년	378,000	“	연5% 증가
2026년	396,900	“	연5% 증가
2027년	416,746	“	연5% 증가
2028년	437,582	“	연5% 증가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구분							
국 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도 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시비	소 계	325,000	343,000	361,900	381,746	402,582	1,814,228
	일반회계	325,000	343,000	361,900	381,746	402,582	1,814,228
	특별회계						
합계		360,000	378,000	396,900	416,746	437,582	1,989,228

6. 작성자(부서) 의견 : 의견 없음

7. 작성자 :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51조2 및 「동두천시 보육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시설명	시설 규모	위치	개소일	주요시설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959㎡	생연동 594-1	2024. 9. (예정)	사무실, 교육실,
아이사랑놀이터	404㎡	행복드림센터3층		시간제보육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		(2024. 6월 준공 예정)		장난감도서관, 상담실 등

나. 위탁기간: 3년간(2024. 1. 1.~2026. 12. 31.)

다. 수탁자격: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위탁사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마. 선정방법: 공개모집(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동두천시 보육 조례』 제14조 규정에의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 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위탁사무명

-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동두천시 보육 조례」 제9조(설치 및 운영)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민간위탁 사무내용

-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사업 규모	소재지	운영비 (천원)	개소일	주요시설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959㎡	생연동 594-1 행복드림센터	398,000	2024. 9. (예정)	사무실, 교육실,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도서관, 상담실 등
아이사랑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	404㎡	3층 (2024. 6월 준공 예정)			

□ 위치도





위치도(동두천시 생연동 594-1)

행복드림센터(2024. 6월 준공예정)

□ 민간위탁 기간

- 위탁 운영기간 : 3년간(2024. 1. 1.~2026.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 사전 검토 후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심사 항목별 「평가기준표」에 의거 심사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 점수 70점 이상 중 최다득점을 받은 위탁기관을 수탁자로 결정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위탁기관 센터장의 전문성, 위탁기관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신청자(법인)가 1개 이하 시 재공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법인)가 1개 이하인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관 선정
 - 다수 운영기관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사 결과 모두 부적격 판정 시 선정하지 않음

□ 수탁자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효율성이 높아져 운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외부자원 개발 및 민간 네트워크 활용이 용이함.
- 철저한 지도·점검 등의 노력으로 민간위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면, 민간에서 다진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2023년 8월 : 임시회 안건 제출
- 2023년 10~11월 :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 11월 중 : 수탁자 선정 결과 공고 및 통보, 협약서 체결

비 용 추 계 서

1. 재반수반 요인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 『동두천시 보육 조례』 제9조

2. 비용 추계의 전제

-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시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비용을 추계함
- 인건비는 타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급여를 참고하였으며 매년 임금 인상률 약 5%를 예상치로 전제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총 소요액		398,000	551,432	579,002	1,528,434
동두천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인건비	234,930	352,394	370,013	957,337
	운영비	61,810	92,715	97,350	251,875
	사업비	101,260	106,323	111,639	319,222

※ 2024년 1월부터 개소 전까지 시설 리모델링공사 및 기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 3명(센터장1, 보육전문요원2) 근무 예정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합 계	1,528,434		
2024년	398,000	- 인건비(6명) - 운영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 사업비(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사업 등)	
2025년	551,432	“	연5% 증 가
2026년	579,002	“	연5% 증 가

5.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100%)

6. 작성자(부서) 의견 : 의견 없음

7. 작성자 :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4. 4. 18>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4.4.18, 2016. 7. 1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4.18, 2016. 7. 13.>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전문개정 2019. 7. 1.]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7. 1.]

제6조(민간위탁 계획) ① 시장은 제5조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민간위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7. 1.]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시립안흥어린이집과 시립불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각각 2023. 12. 31.자 및 2024. 2. 28.자로 만료됨.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체(자)를 각각 공개모집(안흥어린이집), 재위탁(불현 어린이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유형 및 위탁 기간

- 위탁유형: 변경위탁(공개경쟁)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2024. 1. 1.~2028. 12. 31.)

나.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유형: 재위탁
- 위탁기간: 재위탁일로부터 5년(2024. 3. 1.~2029. 2. 28.).

다. 위탁사무: 어린이집 전반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라. 선정방법

- 보육사업안내 국공립 변경/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서류)
- 동두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심사)
- 점수 합산하여 평균 최다득점자 선정(변경위탁 70점 이상, 재위탁 80점 이상)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 시립안흥어린이집과 시립불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각각 2023. 12. 31. 및 2024. 2. 28.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체(자)를 공개모집(안흥어린이집) 및 재위탁(불현어린이집)하고자 함.

□ 민간위탁 추진근거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계약)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운영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재정능력이 건실하고 공신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함
-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위탁시설 현황

	안흥어린이집	불현어린이집
개원일	1986. 1. 3.	2010. 4. 19.
소재지	강변로702번길 13-25	행선로 112
규모	3층(920㎡)	1층(146㎡)
보육정원/현원(명)	115/45	30/29
보육교직원(명)	11	11
수탁자	박문희	문계영
위탁내용	변경위탁(공개모집)	재위탁
위탁사무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위탁기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재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재위탁 기간 만료 도래 전 시립어린이집
선정기준	보육사업안내 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보육사업안내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선정방법	· 동두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개별위원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이상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 선정 · 재위탁자가 평균 8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 추진	
공통사항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발표	

□ 향후계획

-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의결: 2023. 9. 8.
- (변경위탁)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9월 중
(재위탁) 운영실적 평가서 제출: 2023. 9월 중
- (변경/재위탁) 심사 및 결과발표: 2023. 10월 중(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변경위탁/재위탁) 계약체결: 2023. 10월(한)
 - 다만, 재위탁 부적격 시 위탁체 공고 및 접수 11월 중 공개모집 예정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동두천시 회계, 세무 사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합리적인 재정 지출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고문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위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촉 및 위촉 해제(안 제2조)
- 나.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수당 및 자문실적 관리(안 제4조, 제5조)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또는 법인 소속 회계사·세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지원자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고문 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무성의하게 업무 수행을 한 경우
 6. 회계·세무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 ⑤ 고문공인회계사는 회계 업무담당 과장이, 고문공인세무사는 세무 업무담당 과장이 각각 운영한다.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의 예산, 회계·세무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동두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 관련의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세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월말 또는 분기 말에 지급한다.

제5조(자문실적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조제2항 관련)

위 촉 장

공인회계사·세무사 ○ ○ ○

귀하를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자 문 실 적 부

연번	구 분	의 료 연월일	자문의뢰내용	회 신 연월일	회 신 내 용	비 고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비용발생요인

- 월 400천원의 자문수당 지급
- 연 4,800천원 예산 소요

II. 미첨부 근거 규정

-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정에 따른 연평균 발생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를 하지 않음.

IV. 작성자 : 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송진영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 출장 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5조(여비 부담수령시 가산징수) 삭제

-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준용

나.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내용 개정(안 제6조)

- 제4호 단서 중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를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수정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준용 단서 조항(제8호) 신설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4호 중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를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여비 부정수령시 가산징수)</u>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u><삭 제></u>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
에 따른다.

1.~3. (생략)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
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
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 7. (생략)

<신설>

-----.

1.~3. (현행과 같음)

4. -----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
칙」 제6조 -----
-----.

4의2.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
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
항”으로 본다.

붙임 1**관계법령발췌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 변상 등)

제48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동두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1.>

③ 삭제 <2019. 8. 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은 직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11. 22.]

제5조(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1. 2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2.>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 8. 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2.>[종 전 제4조에서 이동 2017. 11. 22.]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2023. 12. 31.→2028. 12. 31.)(안 제17조)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1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10. 8.]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161호, 2020. 10. 8., 일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회계과), 031-860-21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5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교부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2020년부터 매 회계 연도마다 28억원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신청사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청사건립 업무담당과장
2.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
3.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청사건립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

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관리한다.<개정 2020. 10. 8.>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시장은 기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2. 1.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8.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⑦~⑩ 생략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 8. .

제출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캠프캐슬 공원부지 토지매입(변경) 건(홍보미래전략담당관) : 취득

구분	(당초)	(변경)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계(면적/금액)	35,237.45㎡ / 64,758.3백만 원	42,262.45㎡(증 7,025) / 65,561.3백만 원(증 803)
캠프캐슬 공원부지 토지매입 변경 건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취득] 2022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 취득면적 : 35,497㎡ · 기준금액 : 2,057백만 원	[취득] : 토지(신규 추가) · 취득면적 : 7,025㎡ · 기준금액 : 803백만 원

2023년도 관리계획서(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 원)

구 분			당초(취득·처분)			변경(취득·처분)			증감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 득	계	토지	6	21,738.65	17,989.3	7	28,763.65	18,792.3	1	7,025	803	
		건물	7	16,625.72	49,392	7	16,625.72	49,392				
		기타										
	1.매 입	토지	6	21,738.65	17,989.3	7	28,763.65	18,792.3	1	7,025	803	신규 취득
		건물	2	2,921.72	2,018	2	2,921.72	2,018				
		기타										
	2.교 환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기 타 취 득 (양여)	토지										
		건물	5	13,704	47,374	5	13,704	47,374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2	3,126.92	2,623	2	3,126.92	2,623				
		기타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교 환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기 타 처 분	토지										
		건물	2	3,126.92	2,623	2	3,126.92	2,623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 원)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계	토지	1건(4필지)	7,025	803			
	건물	-	-	-	-	-	
1	토지	동두천동 71-1 외 3필지 매입	7,025	803	2023.12.	캠프캐슬 공원부지 매입	금회분
	건물	-	-	-	-	-	

※ 취득 변경 상세 내역(필지별)

번호	구분	당초(22년 수시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증감		비고
		소재지	면적	기준가 격	취득 방법	소재지	면적	기준 가격	취득 방법	면적	기준 가격	
계	토지	13필지	35,497	2,057		15필지	42,522	2,860	수익 계약	7,025	803	
	건물	0동	-	-	-	0동	-	-	-	-	-	
1	토지	동두천동 71-1	1,782	214	수익 계약	동두천동 71-1	5,270	601	수익 계약	3,488	387	국방부 소유
2	토지	동두천동 29-1	1,250	159	수익 계약	"	"	"	"	-	-	
3	토지	동두천동 29-2	1,144	158	수익 계약	"	"	"	"	-	-	
4	토지	동두천동 30-1	2,569	327	수익 계약	"	"	"	"	-	-	
5	토지	동두천동 30-2	2,192	256	수익 계약	"	"	"	"	-	-	
6	토지	동두천동 32-2	228	36	수익 계약	"	"	"	"	-	-	
7	토지	동두천동 산36-7	2,876	38	수익 계약	"	"	"	"	-	-	
8	토지	동두천동 31-2	56	8	수익 계약	"	"	"	"	-	-	
9	토지	동두천동 산34-1	19,240	285	수익 계약	"	"	"	"	-	-	
10	토지	동두천동 33-3	2,489	392	수익 계약	"	"	"	"	-	-	
11	토지	동두천동 산34-3	496	7	수익 계약	"	"	"	"	-	-	
12	토지	동두천동 73-2	1,151	177	수익 계약	"	"	"	"	-	-	
13	토지	동두천동 71-4	24	0	무상 양여	동두천동 71-4	0	0	-	△24	0	매입제외
14	토지	-	-	-	-	동두천동 59-1	3,197	377	수익 계약	3,197	377	국방부 소유
15	토지	-	-	-	-	동두천동 32-13	265	38	수익 계약	265	38	
16	토지	-	-	-	-	동두천동 산34-2	99	1	수익 계약	99	1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 원)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 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소관 부서	비고
	구분	소재지	면적					
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 캠프캐슬 공원부지 토지매입 변경 건 :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가. 사업개요

- 소재지 : 동두천동 산34-1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5.
- 사업규모 : 토지 42,522㎡(15필지)
- 취득금액 : 2,860백만 원
- ※ 총사업비 9,500백만 원(국 7,600, 시 1,900)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한 추가매입
 -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 상 공원부지 11필지 33,691㎡를 토지매입비 국비 80% 지원을 받아 매입 완료 함. 2023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완료 및 공원녹지과의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 내용에 반영하고자 4필지 8,831㎡를 추가 매입하고자 함.

다. 추진경위

- 2021. 12. : 2022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행안부)
- 2022. 4. : 발전종합계획 변경사업 계획 수립 및 경기도 제출(공원 위치변경)
- 2022. 7. :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 실시(경기도 주관)
- 2022. 8. : 의원정담회 안건 제출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2022. 9.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확정
- 2022. 11. :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행안부)
- 2022. 11. :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등
- 2022. 12. : 토지매입 완료(11필지, 33,691㎡)

라. 추진계획

- 2023. 7. : 제4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 2023. 9. :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관리 전환 완료(국방부)
- 2023. 10. : 감정평가
- 2023. 11. : 잔여부지 토지 매입(4필지, 8,831㎡)

마.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치도



현황사진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대상 목록

부서명	사업명	출연근거	출연기관	2023년도 예산액(백만 원)		
				2회 추경	3회 추경	증감
소 계 (1건)				660	880	220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경기신용 보증재단	600	800	200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60	80	20

□ 제안이유

- 2023년도부터 우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확대시행(수수료 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등으로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 소상공인의 자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백만 원을 추가 증액 출연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을 위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10조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동두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추천한도 : 업체당 50백만 원 이내,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지원
 - 지원용도 : 경영안정지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지원업체수	지원금액	비고
2020년	118	226	
2021년	112	264	
2022년	135	393	
2023년	171	519	2023. 7. 현재

※ 향후 지급액은 2023년도 상반기 지급액보다 30% 감액 산정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출자·출연기관	2회추경 예산액	3회추경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600	800	200	

☐ 관계법령발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10조(특례보증)

-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증액 (일자리경제과)
---	------------------------------------

□ 제안이유

- 2023년도부터 우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확대시행(수수료 출연 및 이차보전금 지원)등으로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백만 원을 추가 증액 출연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증액을 위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11조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업체
- 지원내용 : 신규 접수된 특례보증 수수료 전액 지원(업체당 1회, 최초 1년분)
※ 특례보증 수수료율 : 대출금의 1% 이내

○ 지원용도 : 경영안정지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출자·출연기관	2회추경 예산액	3회추경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산출근거)
출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60	80	20	

□ 관계법령발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 기업의 출연금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5.1.>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 정부의 출연금
- 금융기관의 출연금
- 기업의 출연금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11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에 필요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 내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라.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 마. 지원사업 및 위탁(안 제7조~제8조)
- 바. 가사근로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안 제9조)
- 사. 협력체계(안 제10조)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근무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 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가사근로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 · 성명	일자리경제과 박은수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일자리정책팀장 박영경
	담 당 자 성명 · 전화	주무관 박지영 031-860-2366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503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이용자 가족(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사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는 등 적절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등은 입주가사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창조

(경유)

제목 가사근로자법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다시 오직하는 대한민국, 함께 살리는 국민의 나라

고 용 노 동 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이 **제안** 또는 **협조를 요청** 하오니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서를 초래 담당부서(노동관련 부서 등)에서 접수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담당부서 및 지역사람살품권 담당부서에도 반드시 공람(공유)하여 주십시오.

□ 제안 및 협조요청 배경

- 기존에 직업소개나 개인 간의 알선 등을 통해 가정집에서 일하던 “**가사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음
- 그동안 **가사종사자**는 개인 간 거래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도 취약했으나, **동 법률은 요건을 갖춘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직업소개 형태 →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
- ※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은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 저출산, 인구대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동 법률 제3조는 정부인증(직접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여 정부인증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각 지자체는 동 법률이 기존 가사서비스 시장을 정부인증 형태로 전환하여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정부인증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안 및 협조요청 내용

- 법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가사서비스 관련 조례 제정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
- 각 지자체는 **조례 제정 시 반드시 정부인증(직접고용)에 대한 우대(인센티브) 등을 반영하여 정부인증 전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필요한 경우 서울시, 서울 강서구, 전라남도의 조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되, 이 경우에도 정부인증기관 등에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 서울시, 경기도(시흥·양주)는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시 정부인증기관에 가점부여 또는 우선 선정한다는 점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운영하였음(특히 양주시의 경우 정부인증 기관이 없었지만 정부인증기관을 우대한다고 공고함)

으로써, 정부인증을 받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음)

※ 해당 지자체 관내 정부인증기관이 있으면 적극 우대하고, 정부인증기관이 없더라도 정부인증기관을 우대한다는 점을 지속 공표함으로써 정부인증을 유인,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불임의 정부인증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릴 (정부인증기관과 가맹점 등록 안내 등)

※ 우리부는 매년 「 **시도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발표하고 있는 바, 맞벌이 가장 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금년부터 지수 산출에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예: 조례제정?사업운영?안내?홍보 및 정부인증 기관 우대 조치 등)

붙임: 정부인증기관 현황 1부.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처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주무관	정경미	주무관	차정환	고용정책개선 전담 2023. 4. 13. 정책지원	김민서
참조자					
시행	고용정책개선동역마-828	(2023. 4. 13.)	참수	일자리공제마-22907	(2023. 4. 14.)
우	32117	세종특별자치시 권누리대문 402 (여진동 581 고용노동부) 11동 5	/ www.korea.go.kr		
전화번호	044-202-7066	팩스번호	-	/ skomrj@korea.go.kr	/ 비공개

붙임 3**경기도 시·군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비고
총계	2개			
1	경기도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7. 19.	
2	성남시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3.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3. 7. 1. ~ 2025. 12. 31.

나. 위탁사무 :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다. 수탁자 선정 :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간 운영해 온 노하우와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장애인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위탁사무명

-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필요성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가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위탁 사무내용

-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사회복지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운영개요

- 지원 대상 :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 51개소

※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 분	전체 시설수 (개소)	등록 대상 시설수(개소)	전체 인원수 (명)	등록 대상 인원수(명)
총 계	64	51	1,344	1,007
노인복지시설	58	51	1,280	1,007
장애인복지시설	6	-	64	-

- 센터 운영방식 : 위탁운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이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존 설치된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 구성인원 : 2명(팀장 1명, 팀원 1명)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의 지역센터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 수 및 직원 운영 기준에 따라 산정

☐ **민간위탁 기간**

- 위탁 운영기간 : 2023. 7. 1. ~ 2025. 12. 31. (2년 6개월)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산액 : 50,000천원 (하반기)
 - 국(50%) 25,000천원, 도(7.5%) 3,750천원, 시(42.5%) 21,250천원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식약처)

☐ **향후계획**

- 사회복지급식소 등록 및 영양·위생관리 지원 : 2023. 8월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1부. 끝.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60호, 2021. 7. 27., 제정]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

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 ⑥ <생략>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 5. 10. 조례 제2280호]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6조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자치사무는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동두천시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 대상자 확대
(안 제7조제1항제1호나목)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나목 중 “상이자”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 ----- -----.
1. 면제대상	1.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상이자</u> 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u>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u> 의 자가운전 차량 및 동승차량	나. ----- ----- <u>국가유공자, 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u> ----- ----- 사람----- ----- -----..
다. ~ 마. (생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주차장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11, 3814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

[전문개정 1998. 1. 19] 조례 제 924호

개정 1998. 11. 10 조례 제 965호

1999. 4. 16 조례 제 989호

1999. 10. 11 조례 제1015호

2001. 7. 9 조례 제1092호

2002. 1. 22 조례 제1115호

2003. 6. 12 조례 제1176호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

2003. 10. 23 조례 제1193호

(일부개정) 2005.01.10 조례 제1237호

(일부개정) 2006.11.06 조례 제1330호

(일부개정) 2008.06.16 조례 제1434호

(일부개정) 2010.02.11 조례 제1513호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1802호

(일부개정) 2016.04.11 조례 제1841호

(일부개정) 2018.02.05 조례 제1985호

(일부개정) 2018.08.13 조례 제2002호

(일부개정) 2019.04.08 조례 제2054호

(일부개정) 2020.01.01 조례 제2108호

(일부개정) 2021.07.29 조례 제2208호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232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소재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8.2.5.>
2. 민영주차장 :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10.11>

제 2 장 공영 및 민영주차장

제4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전에 주차장의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주차요금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 11. 10>

②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주차장 관리·운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접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1. 주차장 설치대상 토지의 이용현황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18.2.5.>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 ④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 하였거나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주차장설치통보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 11. 10>

- ②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영유료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며, 별표 1에 의한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개정 98.11.10, 2006.11.6.,2018.2.5.>

1.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고 도주한 경우
2.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부치 않은 경우 <개정 2006.11.6>
3.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1. 10., 2018.2.5.>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②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징수한다. <개정 98. 11. 10., 2018.2.5.>

1. 월정기권 및 1회 주차권 발행시
2. 주차장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 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개정 2018.2.5.>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 ④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으며, 1회 주차권 및 정기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98. 11. 10>

- ⑤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고지방법 및 징수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8.2.5.>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
금을 감면한다. <개정 2006. 11.6>

1. 면제대상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자가운전 차량 및 동승차량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고
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
람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개정 2018.2.5.>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관할 지방보훈
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
<개정 2018.2.5.>

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1) 시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공공 목적의 행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
- (2)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 (3) 공휴일 이용차량
- (4) 국가 또는 도 시책에 의할 때(국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성실모범납세필증 부착 차량 등)

2. 경감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동승차량 : 50% 감면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 : 50% 감면

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 : 50% 감면

라. 자동차의 소유주가 다자녀(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임을 증명하는 자동차 : 50%감면 <신설
2018.8.13.>

마. 시장이 실시하는 시책에 참여 하는 자동차 : 50% 감면

1)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2) 모자보건수첩 등 임신부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차량

3) 경기도 및 동두천시 우수 자원 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차량

4)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
록증을 제시하는 차량 등 <개정 2019.4.8.>

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 <신설 2019.4.8.>

사.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 주민편의 도모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영주차장 2시간
이내 무료주차 허용 <신설 2019.4.8.><개정 2022. 12. 30.>

아.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
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 50% 감면 <신설 2021. 7. 29.>

② 제1항제1호의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며,
감면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99.10.11, 2006.11.6., 2018.2.5., 2018.8.13.>

제8조(주차거부금지)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
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2. 12. 30.>

1. 주차장의 위치 및 특성에 따라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6조제2항의 후단 규정에 의한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한 경우

6. 그 밖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22. 12. 30.>

제8조의2(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 및 그 주차장에 주차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거나, 공영주차장 관리자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4.8.>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이용자 주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8.2.5.>

② 노외주차장의 내부에 설치할 안내표지의 규격 및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외부에 설치할 안내표지 및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1>

③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등의 기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의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 × 철도연

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5.>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삭제 98. 11. 10>

3. <삭제 2012.12.31>

4. <삭제 2012.12.31>

5. 공공시설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사회단체 <신설 2012.12.31>

② 제1항의 조건을 구비한 자가 수탁관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개인의 경우 최근 재산세 납부증명서, 그 밖에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98. 11. 10>

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참여결정서류 <개정 98. 11. 10>

③ 제2항에 의한 수탁관리자의 선정방법과 수탁관리자가 시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16> <개정 2012.12.31>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1호 이외의 | 수의계

약 | 제10조제5항 규정에 | 3개월 단위로 선납 |

| 비영리 공익법인 | | 의한 위탁대행료 산출 | |

| | | 금액 | |

| | | |

| |

| | | |

|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 |

| | | |

| |

| |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2. 계약보증금 납부 및 시기
3. 관리수탁시 주차요금 징수방법
4. 해약 조건
5. 그 밖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해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2.12.31>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장구획면적(㎡)×면수×해당(또는 인근)토지의개별공시지가의합(원)/필지수×25/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25/1,000×점용기간(년)×지수×(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주차장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원)×25/1,000×기간(일)×지수

※ 지수 = 각급지별 1회 주차장요금(30분기준)÷1급지 1회 주차장요금(30분기준)<개정 2015. 10. 30.>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 ①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등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 2003.6.12., 2018.2.5.>
- ②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는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6.16>
- ④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승강기, 기타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3.10.23, 개정 2006.11.6>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설치 기준은 주차대수 100대 초과하는 경우(별표 2)에 한하여, 총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제12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8.2.5.>
-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은 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삭제"<2015. 10. 30.>

제13조 <삭제 99.10.11>

제14조 <삭제 2001. 7. 9>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0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본조개정 2001. 7. 9.,2018.2.5.>

제15조의2(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1면당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 포함)에 설치의무자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주차구획1면은 18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받지 못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대납금액은 100분의25를 감액하며 금액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토지가격 포함)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토지가격과 주차구획 면적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와 같다.<본조신설 2001. 7. 9.,2018.2.5.>

제1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화(老朽化)·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으로서 영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숫점 이하는 이를 한 대로 본다)로 완화할 수 있다. 단,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경우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2.5.]

제16조 <삭제 2001. 7. 9>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5.>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 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장 보 칙

제18조(보조) ① 시장은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두천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집안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비율은 설치비용의 80% 범위내로 하며 보조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5. 1. 10>

제19조(과징금 처분 등) ① 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분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기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삭제 98. 11. 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 1. 10>

제20조 삭제<2020. 1. 1.>

제21조(의견청취)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 11. 10, 개정 2005. 1. 1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1. 10>

부칙<1998. 1. 19 조례 제9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11. 10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4. 16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11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9 조례 제109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 1. 22 조례 제11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건축신고를 한 공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화된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 6. 12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23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10 조례 제12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부칙<2006. 11. 6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2. 11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31 조례 제1642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 10. 30.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5. 조례 제1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허가·신고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8.8.13.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29. 조례 제2208호>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 : 50% 감면

②~⑤ 생략

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난 2016년 6월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승인 후 국가산업단지 확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2022년 5월 승인된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가. 용도지역 : 91개소 (도시지역 7개소 변경, 비도시지역 84개소 변경)
- 나. 용도지구 : 3개소 (자연취락지구 2개소 신설, 1개소 변경)
- 다. 용도구역 : 1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 축소 변경)
- 라. 도시계획시설 : 8개소
(도로 1개소, 공원 3개소, 공공청사 3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난 2016년 6월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승인 후 국가 산업단지 확정, 2022년 5월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상위계획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계획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위치 : 동두천시 행정구역 전역

- 면적 : 95.68km²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2년

- 목표연도 : 2030년

○ 내용적 범위

- 용도지역 : 91개소 (도시지역 7개소 변경, 비도시지역 84개소 변경)

- 용도지구 : 3개소 (자연취락지구 2개소 신설, 1개소 변경)

- 용도구역 : 1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 축소 변경)

- 도시계획시설 : 8개소

(도로 1개소, 공원 3개소, 공공청사 3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 추진경위

○ 2022. 09. : 재정비(1차:도시계획시설) 시의회 정담회

○ 2022. 10. : 동두천 시의회 정례회 개최

○ 2022. 10. : 재정비(1차: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

○ 2022. 11. : 재정비(1차:도시계획시설) 주민설명회

○ 2022. 12. ~ 02. : 재정비(1차)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 2023. 03. : 재정비(1차:도시계획시설) 주민공람 재공고

○ 2023. 03. : 재정비(1차: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04. : 재정비(1차: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3. 07. : 재정비(2차: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입안,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2차) 변경(안)

○ 경기도 결정사항

- 용도지역

- 도시지역: 1만㎡ 미만의 용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 비도시지역 : 「경기도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검토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관리지역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

구 분	기 정		변 경	개 소 수	면적(㎡)	비율(%)
합계				91	375,901	100.0
도시지역	소계			7	19,211	5.1
	일반공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	665	0.2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	8,787	2.3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	8,372	2.2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1	1,387	0.4
도시지역 외	소계			84	356,690	94.9
	관리 지역 재정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8	152,479	40.6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0	68,835	18.3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	78,660	20.9
	관리 지역 세분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30	23,238	6.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1	2,363	0.6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	31,115	8.3

- 용도구역

- 소요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개소로 분리되어 있어, 지정목적과 적합하지 않고 농경지로 이용 중인 곳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척

구 분	내 용			
	개 소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요산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변경)	2,961,429	감) 57,719	2,903,710

○ 동두천시 결정사항

- 용도지구

- 여건변화에 따른 지정 자연취락지구의 경계 조정 및 신규 자연취락지구 신설

구 분	내 용			
	개소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새골 자연취락지구	1개소 (변경)	10,320	증) 771	11,091
탑동 자연취락지구	1개소 (신설)	-	증) 20,594	20,594
내안흥 자연취락지구	1개소 (신설)	-	증) 49,665	49,665

- 도시계획시설

- 주민의견 및 시정책사업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구분	계		신설		변경		폐지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	개소수	면적 (㎡)	개소수	면적 (㎡)
합계	8	359,980	4	209,883	4	150,097	-	-
도로	1	37,311	-	-	1	37,311	-	-
공원	3	286,704	2	197,697	1	89,007	-	-
공공청사	3	27,593	1	3,814	2	23,779	-	-
폐기물처리시설	1	8,372	1	8,372	-	-	-	-

□ 향후 계획

- 2023. 08.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2023. 09. : 시의회 의견청취
- 2023. 10. :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심의 :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동두천시 결정사항)
 - 자문 : 용도지역·구역(경기도 결정사항)
- 2023. 11. : 재정비(2차) 동두천시 결정사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2023. 12. : 재정비(2차) 경기도 결정사항(용도지역·구역) 결정(변경) 승인신청

- 붙임 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 조서 1부(별첨).
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2차) 관리카드(안) 1부(별첨).
3. 관계법령발췌서 1부. 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2.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삭제 <2022. 11. 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삭제 <2021. 7. 6.>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철도중 도시철도
 -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 마. 유통업무설비
 - 바. 학교중 대학
 - 사.~아. 삭제 <2018. 11. 13.>
 -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차.~타 삭제 <2018. 11. 13.>
 -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2.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정목적 달성이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나.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다.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우리시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수립 중인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위 치: 동두천시 관내 계획관리지역 일원
- 면 적: 3,768,303㎡ (약 3.77km²)
- 유 형: 일반형 61개소(3.08km²)

유도형 21개소(0.69km²) ▶ 주거형 8개소(0.34km²) / 근린형 5개소(0.11km²) / 산업형 8개소(0.24km²)

나.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

- 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밀도계획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 환경저감대책 등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산지개발(지형순응형개발)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 우리시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하고자 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 제안이유

-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개별 건축이 확산되고 주거 및 공장 등의 용도혼재에 따른 기능상충과 기반시설 설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 우리시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 2024. 1.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상에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당초 건축이 가능하였던 제조업소, 공장, 판매시설(3,000㎡ 이상) 건축 불가

□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및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성장관리계획은 높은 개발압력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법정계획임

□ 추진경위

- 2022. 6.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2. 6. ~ 9.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2023. 5. 구역 설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검토·작성
- 2023. 6. 성장관리계획(안) 입안도서 작성
- 2023. 7. 14. 성장관리계획(안) 입안 계획 보고
- 2023. 7. 19.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14일간, 제출 의견 없음)
- 2023. 7. 26. 주민설명회 개최 (3일간, 제출 의견 없음)

□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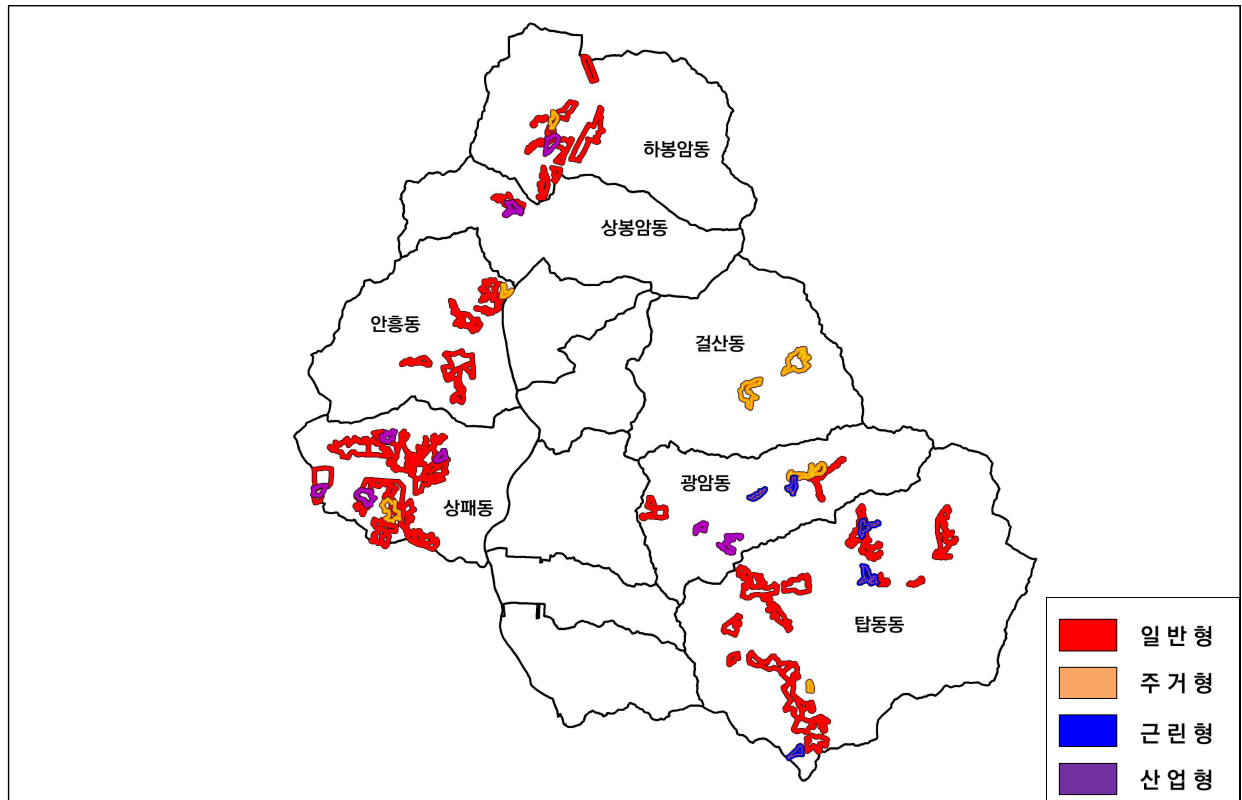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위 치: 동두천시 관내 계획관리지역 일원
- 면 적: 3,768,303㎡

구분	구역명	면적(㎡)	지정사유
신설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3,768,303	- 동두천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경기도 동두천시	결산동	-	증) 170,629	170,629
			광암동	-	증) 234,488	234,488
			상봉암동	-	증) 86,399	86,399
			상패동	-	증) 1,304,803	1,304,803
			안흥동	-	증) 394,525	394,525
			탑동동	-	증) 1,122,274	1,122,274
			하봉암동	-	증) 455,185	455,185

※ 기 계획지역(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제외



○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

- 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여야하며, 추가 도로 개설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건축물 밀도계획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 완화 항목 준수 시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건폐율 4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125% 이하)
- 인센티브 운용 방안

구분	인센티브 부여 기준	건폐율	용적률	비고
도로 개설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면적에 추가로 도로를 확보한 면적	기준건폐율(%)× (기반시설면적 / 대지면적)×2.5	기준용적률(%)× (기반시설면적 / 대지면적) ×2.5	
주민 공동시설	지역내 기반시설의 확보와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을 확보하였을 경우	기준건폐율(%)× (기반시설면적 / 대지면적)×1.5	기준용적률(%)× (기반시설면적 / 대지면적)×1.5	
건축물 권장용도	건축물의 주용도가 권장용도로서 총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4.0%	8.0%	
완충공간 조성	환경위해시설은 부지경계선 기준으로 2m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하였을 경우	2.0%	5.5%	
지형순응형 개발	스카이라인의 조화를 위해 지형순응형개발 중 하나인건축물의 지붕을 경사형 지붕으로 할 경우	2.0%	5.5%	
조경기준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따라 조성해야 하는 조경 외 추가로 조경을 조성했을 경우	기준건폐율(%)× (조경추가면적 / 대지면적)×1.5	기준용적률(%)× (조경추가면적 / 대지면적)×3.0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 유형구분 : 일반형 61개소(3.08km²)

유도형 21개소(0.69km²) - 주거형 8개소(0.34km²), 근린형 5개소(0.11km²), 산업형 8개소(0.24km²)

- 건축물의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계획

구분		목적	불허용도
일반형		입지 규제(불허용도) 최소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유도형	주거형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공장 및 창고(농·임·축·수산업용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제외)
	근린형	역세권 및 소생활권 상업기능 제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산업형	산업기능 집적화, 공장·창고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수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환경저감대책 등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환경위해시설은 정온시설(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상 이격

-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2m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 시 인센티브 제공
- 산지개발(지형순응형개발)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산지구릉지의 경우 자연경사를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및 S자형 도로 개설 권장
 -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경사형 지붕 적용시 인센티브 제공

□ 향후계획

- 2023. 9. 의회 의견 청취
- 2023. 10.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11.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 고시
- 2023. 12.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시행

- 붙임 1.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1부(별첨).
2.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도면 1부(별첨).
3. 관련 법령 발췌서. 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

정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 ⑥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70조의13제5항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④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목적

2.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 8 .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2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전자게시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기 위한 공고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23. 10. ~ 2028. 10.
- 나. 위탁사무 : 동두천시 전자게시대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다. 운영예산 (미편성)
 - 위탁 선정업체는 디지털광고물 광고수익금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전반적인 일체 비용 자체 총당
- 라. 수탁자격
 - 전자게시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사업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실적증명원 제출)
- 마.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장기·지속성 부합 여부
 -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초과수요로 광고지연 사례 증가 추세
 - 전자게시대 한 1기당 25구좌의 광고게시(운영시간 : 06:00 ~ 24:00)로 인하여 수요충족 및 홍보효과 증대
- 전문지식·기술 필요성 여부
 - 전자게시대는 신개념 사업으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사시설이 적어 운영 노하우 확보가 어려우며 공무원의 주기적인 인사이동 특성으로 인한 전문지식과 기술, 업무 연속성 저해가 예상됨.
 - 전자게시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 도모
-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광고 사용 요금표 게시 및 광고수수료 소득으로 인한 사업성.
 - 위탁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성과평가, 지도·감독하여 성과측정 용이

□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 검토

- 민간위탁이 아닌 자체운영을 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 공무원 배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정원증원 및 추가예산이 요구됨
-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인력·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요구됨

□ 시설 현황

연번	설치위치	설치완료일	설치지역	표시면적(㎡)
1	지행역	2023. 7.	동두천시 지행동 723	11.96㎡
2	세아교차로	2023. 7.	동원시 생연동 809	11.96㎡

□ 운영개요

- 사 업 명 : 동두천시 LED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운영사업
- 운영위치 : 동두천시 관내
- 운영규모 : 전자게시대 2기
- 운영시간 : 06:00 ~ 24:00(1일 18시간 연중무휴)
- 위탁기간 : 2023. ~ 2028. (5년)
- 표출방법 : 1회 9초 이상 표출, 상업광고 70%, 공공광고 30%
※ 표출 비율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종 사 자 : 3명 (일반관리직, 디자이너, 영업직)

□ 위치도

□ 위 치	지행역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723]
	
□ 위 치	세아교차로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809]
	

위탁사무의 범위

-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운영 · 보수 · 관리
 - 전자게시대 게시, 운영, 마케팅
 - 전자게시대 하자 발생 시, 위탁업체 자부담 보수관리

☐ 위탁 기간 : 위 · 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

☐ 민간위탁기관 선정 방식

-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 신청 자격 : 전자게시대 운영경험,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실적증명원 제출)

☐ 소요예산 : 미편성

- 위탁 선정업체는 디지털광고물 광고수익금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일체 비용 자체 충당.

☐ 향후 계획

-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23. 8월
- 임시회 원안가결 및 민간위탁 모집공고 : 2023. 9월
- 민간위탁 업체선정 및 협의서 체결 : 2023. 10월
-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정상운영 : 2023. 11월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7. 29.]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207호, 2021. 7. 29., 일부개정]

경기도 동두천시(자치행정과), 031-860-2127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7. 1.31.>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동두천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19. 7. 1.]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 3 조 관 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u>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 3 조 관 련)</u> 1.일반기준 가. ~ 나. (생 략) 2.개별기준	[별표] <u>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 3 조 관 련)</u> 1.일반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2.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신 설>				
「지 역 보 건 법」 제23조 의 규 정 에 따 른 신 고 를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으 로 신 고 하 고 건 강 검 진 등 을 한 자	법 제34 조 <u>제1항</u> 제1호	100	200	300
「지 역 보 건 법」 제29조 를 위 반 하 여 동 일 명 칭 을 사 용 한 자	법 제34 조 <u>제1항</u> 제2호	100	200	300

위 반 사 항	근거법 령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지 역 보 건 법」 제22조 제3항을 위 반 하 여 정 보 또 는 자 료 를 파 기 하 지 아 니 한 자	법 제34 조제1 항	1.00	2.0	3.0
-----	-----			
-----	-----			
-----	-----			
-----	제2항	---	--	--
-----	제2항	---	-	-
-----	-----			
-----	-----			
-----	제2항	---	--	--
-----	제2항	---	-	-
-----	-----			

붙임 1**관계법령발췌서****□ 지역보건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

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8. 11. 1.]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2016호, 2018. 11.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2006. 5. 13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8. 11. 1.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 3 조 관 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황주룡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 개정 (안 제3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 법령 발췌서 : 붙임

-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제1항

☐ 참고사항 : 현행 조례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명, 부위원장 3명”을 “1명, 부위원장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위원장은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며, 민간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원, 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고문은 시장,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지역 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 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 ----- 1명, 부위원장 4명----- ----- -----.
② 위원회의 <u>공동위원장은 동두 천시의회 의장과 민간위원 1명 으로 하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u>	② ----- <u>위원장</u> ----- ----- ----- -----.
③ 위원은 <u>시의원, 시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 임원, 공개 모집 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u>	③ ----- <u>시</u> ----- ----- ----- -----.
④ <u>자문위원은 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그 밖에 시장 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u>	④ <u>고문은 시장, 시의회의장, 국 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으로 하 며, 자문위원은 지역 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u>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지역발전과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 공동 대응을 확대하기 위해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현안 사업 및 미군재배치에 따른 지역발전 지연에 대한 시민운동
2. 현안 사업 및 미군재배치에 따른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건의활동
3. 미군공여지 반환촉구 및 반환된 미군공여지 개발을 촉구하는 건의활동
4. 미군재배치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
5. 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시민운동 및 활동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원, 시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 임원, 공개 모집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은 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재수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사회유지에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노동의 저평가 현상 및 가치 절하 현상을 타파하고 보다 나은 돌봄노동의 사회 제도와 관습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따른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적용 범위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6조~제7조)
- 지원사업 및 처우개선 수당 (안 제8조~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
-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11조)
-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39조의2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동두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 환경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5.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처우개선 수당) 시장은 관내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제외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 시에는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

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본조신설 2007. 8. 3.]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전문정 2007. 8. 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6. 4., 2015. 12. 2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5. 12. 22.]

☐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동두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관련 현황

기준일 : 2023. 7. 18.

연번	지자체명 (무작위순)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비고
1	경기도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1. 10. 6.	
2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2. 12. 14.	
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7. 12.	
4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6. 26.	
5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7. 17.	
6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6. 30.	
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2. 24.	
8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10. 20.	
9	경상남도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7. 7.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2023. 7. 13.	
1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4. 7.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2023. 3. 30.	
13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2023. 4. 14.	
14	전라남도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3. 30.	
15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3. 31.	
16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2. 10. 17.	
17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2023. 6. 30.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김재수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동두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안 제4조)
- 예방교육 및 홍보, 조치, 상담 (안 제5조~제7조)
- 피해 직원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안 제8조~제9조)
- 실태조사 (안 제10조)
- 비밀준수 (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공격적·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

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아.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승진·인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자. 그 밖에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접수·상담 및 안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접수와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접수 및 상담 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원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공무원법

-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0. 8.>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8.>
-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0. 8.>
-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 29., 2021. 10. 8.>
-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권영기 의원)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8.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음. 이에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성들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지원대상 (안 제2조)
- 예방접종 실시 (안 제4조)
- 위탁계약 체결 (안 제5조)
- 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 (안 제7조~제8조)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 제11조)

○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 불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임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지역보건법 제2조

○ 의료법 제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3조(우선 접종 대상 선정)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한 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제4조(예방접종 실시)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7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지급)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접종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0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제12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 : 이은경 의원)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8.

발 의 자 :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 제정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지원 대상 (안 제5조)
- 예방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안 제6조~제7조)

○ 실태조사 (안 제8조)

○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제10조)

☐ 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임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 참고사항 : 불임

○ 경기도 및 경기도 내 고독사 예방 지원 관련 조례 현황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5.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6. 방문간호 서비스
7. 관내 각종 교육 및 문화행사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9. 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경기도 및 경기도 내 고독사 예방 지원 관련 조례 현황

기준일 : 2023. 7. 17.

연번	지자체 (가나다순)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비고
1	가평군	가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2015. 4. 20.	
2	경기도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0. 10. 8.	
3	고양시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2021. 10. 1.	
4	광명시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	2022. 3. 2.	
5	광주시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3. 4. 7.	
6	구리시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2015. 4. 20.	
7	군포시	군포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2. 12. 14.	
8	김포시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2020. 7. 1.	
9	남양주시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2015. 1. 8.	
10	동두천시	동두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2018. 2. 5.	
11	부천시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20.	
12	성남시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3.	
13	수원시	수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2022. 2. 7.	
14	시흥시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2017. 4. 28.	
15	안산시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7.	
16	안산시	안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2017. 7. 25.	
17	안성시	안성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2021. 12. 17.	
18	안양시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21. 2. 19.	
19	양주시	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2. 12. 26.	
20	양평군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2019. 12. 26.	
21	여주시	여주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17.	
22	여주시	여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2022. 1. 10.	
23	연천군	연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3. 4. 20.	
24	오산시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3. 6.	
25	용인시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2. 4. 13.	
26	용인시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2019. 12. 13.	

연번	지자체 (가나다순)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비고
27	의왕시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8. 3.	
28	의정부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2023. 4. 13.	
29	이천시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2023. 3. 14.	
30	파주시	파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2017. 12. 22.	
31	평택시	평택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2021. 11. 3.	
32	포천시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28.	
33	하남시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2017. 10. 16.	
34	화성시	화성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2023. 6. 28.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도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동두천시 상징물(B.I, 캐릭터, 서체) 개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 시기의 규격과 모양에 대한 규정 외에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깃봉 및 깃대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브랜드 정의 및 종류 신설(안 제2조, 제3조)
- 상징물 명칭 및 종류 변경(안 제3조)
- 시기의 깃봉 및 깃대 기준 조항 수정(안 제7조)
- 기존 도시브랜드, 휘장, 캐릭터 디자인 변경(별표2부터 별표6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상징물 개발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B.I와 캐릭터 디디씨 및 대표서체인 소요단풍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기의 제작 방법으로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를 준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에 따라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에 따라 협의체 명칭 변경 (안 제9조, 제10조)
- 위원장을 소관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다함께돌봄 업무 팀장에서 아동 돌봄 업무 팀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업무 과장에서 아동 돌봄 업무 과장으로 변경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도록 돌봄협의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체 위원장을 당초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입주자 지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준공예정인 동두천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에 필요한 실전경험과 경영컨설팅을 통해 창업 도전정신을 기르고 우리 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명칭을 정비하고 원활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지원 근거를 신설함.

나. 주요내용

- 센터 명칭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로 변경
- 조례의 목적에 근거 상위법령인 「진로교육법」을 명시함(안 제1조)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 명칭을 간소화하였고, 진로체험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진로체험사업 참여자에게 교육자료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시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수준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2024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창업 분야 전문지식 및 창업자 육성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센터 운영의 안정성·전문성·효율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창업지원센터 주요 위탁 사무
 -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및 입주자 모집 및 선정·관리
 -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기간 : 3년(2024. 4. ~ 2027. 3.)
- 위탁예산 : 36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창업과 관련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 지원 사업의 특성상 초기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경영 컨설팅,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위탁의 기간, 신청자격,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51조2 및 「동두천시 보육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시설명	시설 규모	위치	개소일	주요시설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959㎡	생연동 594-1		사무실, 교육실,
아이사랑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시설)	404㎡	행복드림센터3층 (2024. 6월 준공 예정)	2024. 9. (예정)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도서관, 상담실 등

- 위탁기간: 3년간(2024. 1. 1.~2026. 12. 31.)
- 수탁자격: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사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선정방법: 공개모집(보육정책위원회 심의·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지 발달과정에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의 기간, 신청자격,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시립안흥어린이집과 시립불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각각 2023.12.31.자 및 2024.2.28.자로 만료됨.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체(자)를 각각 공개모집(안흥어린이집), 재위탁(불현어린이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립안흥어린이집 민간위탁 유형 및 위탁 기간
 - 위탁유형: 변경위탁(공개경쟁)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2024. 1. 1.~2028. 12. 31.)
-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유형: 재위탁
 - 위탁기간: 재위탁일로부터 5년(2024. 3. 1.~2029. 2. 28.).
- 위탁사무: 어린이집 전반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선정방법
 - 보육사업안내 국공립 변경/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서류)
 - 동두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심사)
 - 점수 합산하여 평균 최다득점자 선정(변경위탁 70점 이상, 재위탁 80점 이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개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위탁의 기간, 신청자격,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회계, 세무 사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합리적인 재정 지출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고문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위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촉 및 위촉 해제(안 제2조)
-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수당 및 자문실적 관리(안 제4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재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회계·세무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 회계사와 세무사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 출장 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5조(여비 부담수령시 가산징수) 삭제
 -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준용
-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내용 개정(안 제6조)
 - 제4호 단서 중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를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수정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준용 단서 조항(제8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에서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바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 12. 31. 만료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2023. 12. 31.→2028. 12. 31.)(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5년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업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캠프캐슬 공원부지 토지매입(변경) 건(홍보미래전략담당관) : 취득

구분	(당초)	(변경)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계(면적/금액)	35,237.45㎡ / 64,758.3백만 원	42,262.45㎡(증 7,025) / 65,561.3백만 원(증 803)
캠프캐슬 공원부지 토지매입 변경 건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취득] 2022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 취득면적 : 35,497㎡ · 기준금액 : 2,057백만 원	[취득] : 토지(신규 추가) · 취득면적 : 7,025㎡ · 기준금액 : 803백만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캠프캐슬 미매입 잔여부지인 동두천동 71-1 외 3필지로서 향후 반환공여 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을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부서명	사업명	출연근거	출연기관	2023년도 예산액(백만 원)		
				2회 추경	3회 추경	증감
소 계 (1건)				660	880	220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경기신용 보증재단	600	800	200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60	80	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로 하여금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에 필요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 내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 지원사업 및 위탁(안 제7조~제8조)
- 가사근로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안 제9조)
- 협력체계(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정당한 근로계약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과 더불어 가사근로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7. 1. ~ 2025. 12. 31.
- 위탁사무 :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수탁자 선정 :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간 운영해 온 노하우와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장애인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 대상자 확대 (안 제7조제1항 제1호나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대한 예우를 위해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한해 주차요금을 면제하였던 것을 국가유공자 전체와 그 유족까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하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의 감면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첫째, 국가유공자의 예우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주차요금의 ‘감경’이 아닌 ‘전액 면제’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단을 사용해야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수혜자의 상황이나 여건의 차이에 따라 적절하게 상대적 대우를 해야한다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합리적인 차등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이등급을 받지 않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전액면제’ 방식이 아닌 적절한 ‘감경률(eg. 50~90%)을 택하는 방식’ 또는 ‘일정시간 면제 후 감경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택하여, 요금 면제로 인한 밤샘주차나 장기주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난 2016년 6월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승인 후 국가산업단지 확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2022년 5월 승인된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용도지역 : 91개소 (도시지역 7개소 변경, 비도시지역 84개소 변경)
- 용도지구 : 3개소 (자연취락지구 2개소 신설, 1개소 변경)
- 용도구역 : 1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 1개소 축소 변경)
- 도시계획시설 : 8개소 (도로 1개소, 공원 3개소, 공공청사 3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현실화 및 기반

시설의 정비 등 지역개발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재정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 동양대학교 주변은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주거환경 등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패동 신한대학교 주변도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반영이 필요함
- 현재 국가산업단지 1차 공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2차 공사도 진행계획임에 따라 공업단지 배후도시로의 역할도 필요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패동 신한대 주변 개발계획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검토하시기 바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우리시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수립 중인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위 치: 동두천시 관내 계획관리지역 일원
 - 면 적: 3,768,303㎡(약 3.77km²)
 - 유 형: 일반형 61개소(3.08km²) / 유도형 21개소(0.69km²) ▶ 주거형 8개소(0.34km²) / 근린형 5개소(0.11km²) / 산업형 8개소(0.24km²)
-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
 - 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밀도계획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 환경저감대책 등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산지개발(지형순응형개발)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2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전자게시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기 위한 공고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0. ~ 2028. 10.
- 위탁사무 : 동두천시 전자게시대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예산 (미편성)
 - 위탁 선정업체는 디지털광고물 광고수익금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전반적인 일체 비용 자체 충당
- 수탁자격
 - 전자게시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사업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실적증명원 제출)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 지행역과 세아교차로에 설치된 전자게시대에 대한 운영을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의 기간, 신청자격,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동두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역보건법」 제34조의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 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5년이 경과한 자료를 파기하고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및 제34조 제1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황주룡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이해 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개정 (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부분을 바로잡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와 관련하여, 우리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해충돌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김재수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사회유지에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돌봄노동의 저평가 현상 및 가치 절하 현상을 타파하고 보다 나은 돌봄노동의 사회제도와 관습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따른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적용 범위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6조~제7조)
- 지원사업 및 처우개선 수당 (안 제8조~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
-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안 제11조)
-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김재수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동두천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안 제4조)
- 예방교육 및 홍보, 조치, 상담 (안 제5조~제7조)
- 피해 직원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안 제8조~제9조)
- 실태조사 (안 제10조)
- 비밀준수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 운영과 예방교육, 피해 직원의 보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 건강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권영기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음. 이에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성들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지원대상 (안 제2조)
- 예방접종 실시 (안 제4조)
- 위탁계약 체결 (안 제5조)
- 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 (안 제7조~제8조)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 제11조)
-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것으로, 국가는 2018년부터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신접종을 실시하였고, 2022년부터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26세까지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18세~26세까지는 저소득층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시 18세~26세 여성 중 백신접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궁경부암 예방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2. 이은경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23. 8. 29.

다. 상정일자 :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 설명, 질의답변

제2차 본회의 심의

제3차 본회의 토론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지원 대상 (안 제5조)
- 예방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안 제6조~제7조)
- 실태조사 (안 제8조)
-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고독사하는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 음”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